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2024. 12. 3.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5. 6. 4.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법률은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개정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에 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주요내용

-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제8호)
- 나. 국가인권교육원이 인권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교육관계기관등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인권

교육원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5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양육지원시설·생활지원시설·일시지원시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정책협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 “각 협의회”로 한다.

③ 교육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협의회”를 “각 협의회”로 한다.

② 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2 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권교육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협의회”를 “각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협의회”를 “각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각 협의회”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가인권교육원)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인권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인권교육 실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의 지원

3.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운영

4. 학교, 법인, 단체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시민대상 교육

5. 인권 교육과정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관리

6. 인권교육 관련 홍보·협력

7.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②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6. ----- ----- ----- 제9조 -----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u> <u>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u>	8. ----- ----- ----- 제4호 ----- ----- <u>출산지원시설 · 양육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 · 일시지원시설</u> -----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4. (생략)

<신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 설치 및 구성) ① -----

-----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 교육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협의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기능) ①협의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
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
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

-----.

제20조(협의회 기능) ① 정책협
의회-----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2 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권교육 수행 및 지원
에 필요한 사항

③ 각 협의회-----

-----.

제21조(협의회 운영) ① 각 협
의회-----
-----.

② 각 협의회-----

-----.

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밖에 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③ ----- 각 협회 -----

-----.

제22조(국가인권교육원) ① 법 제 26조의2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인권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인권교육 실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의 지원
3.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운영
4. 학교, 법인, 단체 등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시민대상 교육
5. 인권 교육과정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관리
6. 인권교육 관련 홍보·협력
7.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②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u>제22조</u> · <u>제23조</u> (생략)	<u>제23조</u> · <u>제24조</u>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25 - 9773